

kakaopay insurance

직거래전월세보험 보험약관

고객센터번호

1544-0022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0534호(2025.09.01)

홈페이지

kakaopayinscorp.co.kr

[직거래전월세보험] 보험약관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안내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내용 요약서

보험용어 해설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장의 제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1조(보험가입금액 감소 및 책임의 감소 또는 소멸)

제12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제13조(보험금의 분담)

제14조(손해방지의무)

제15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0조(권원조사비용)

제21조(청약의 철회)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제26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2조(계약의 해지)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6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소멸시효)

제40조(약관의 해석)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개인정보보호)

제44조(준거법)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가입자 유의사항]

*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재물 관련 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취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4.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5. 계약의 소멸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보험료의 환급 조항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 (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급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보험용어	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피보험자가 확보된 부동산의 임차권상의 하자로 인한 임차권자의 권리의 상실 또는 완전성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으로 보험증권에 성명이 기재된 당사자 및 그 상속인, 수증자, 유족, 대리인 또는 법적 승계인을 비롯하여 법률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말합니다. 기명된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도 회사가 기명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나 항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금 청구인: 손실 또는 손해를 청구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마. 권원: 보험증권상 목적부동산의 표시란에 기재된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바. 목적 부동산: 보험증권에 기재된 법률상 부동산을 말합니다. 다만, 목적 부동산에는 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지역의 경계선 밖의 부동산 및 인접하는 거리, 도로, 수로에 대한 권리, 다른 소유권이나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 법률: 법률과 그 하위 법령 및 정부의 규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아.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 소유권: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사항을 말합니다.

차. 공적기록: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등기부, 건축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건축물대장 및 지

적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법에 의해 관리되는 주민등록표색인부를 말합니다.

카. 등록 : 등기부 및 대장에 등기 또는 등재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 보험개시일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자로서 회사가 보험료 수령 후 보험승낙을 통해 보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파. 임차보증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또는 그 일부를 말합니다.

하. 전월세계약시작일 : 임대차기간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바. 손실 및 손해 : 제 3 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법]

이자율 계산법은 원금에 대하여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ex)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단리계산법: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times 10\%) = 120\text{원}$

복리계산법: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times 10\% = 121\text{원}$

나.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보험종료일로 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하고 보험기간중 발견된 아래의 손실 및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전까지 발견된 손해는 보험기간 중 발견된 손해로 봅니다.

1.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위조, 사기, 강박, 무권대리, 행위무능력, 법인의 적법한 수권 없는 이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와 달리 성립되거나 귀속된 경우 이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2. 목적부동산 상의 소유권의 등기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아래 각 목의 사유에 의하여 임차권이 성립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위조, 사기, 강박

나. 행위무능력

다. 무권대리

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지 않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목적부동산의 임차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나 법적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② 피보험자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에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 각 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 경비 또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

[예시] : 피보험자 스스로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포기한 경우

2. 전월세계약 시작일의 익영업일 0시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다만 전월세계약 시작일자가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의 다음날 0시 이후에 발생한 권리제한.
3. 대항력 최초 성립 이후 피보험자가 전월세 물건지에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
4. 전월세 계약 시작일 이전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가 변경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다만, 피보험자가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변경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예시] : 소유자 변경 등

5. 등기부상 하나의 목적 부동산에 다수의 임차인이 부분 임차하여 임차권을 설정하는 등 선순위 권리를 가지는 타 임차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등기부상 하나의 목적 부동산 예시] : 다가구주택 등

6. 목적부동산에 대한 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

7.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한, 규제 또는 금지하는 법률(건물 및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률을 포함함)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사항

나. 목적 부동산 중 기존의 정착물 또는 장래에 설치될 정착물의 특성, 면적, 위치에 대한 사항

다. 소유권의 대상인 목적 부동산의 분할, 목적 부동산의 면적변경, 목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과거에 포함되었던 필지의 면적 변경에 대한 사항

라.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8.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목적 부동산의 수용, 환매, 몰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다만, 당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사항이 전월세계약시작일자 현재 공적기록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9. 전월세계약시작일자 현재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하자, 제한, 부담, 불리한 청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가. 보험금 청구인이 설정, 부담, 인수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에 합의한 권리제한

나. 회사는 당해 권리제한에 대하여 알고 있지 않으나, 보험금 청구인은 그러한 권리제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금 청구인이 이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가 되는 일자 이전에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권리제한

다. 보험금 청구인에게 결과적으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권리제한

10.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생,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권자 권리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1. 공적기록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수권, 용수에 대한 청구 또는 권리와 관련된 손실이나 손해

12. 산림, 광물, 석유, 가스 및 탄화수소 등 천연자원에 대한 청구 또는 권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3. 제3자가 대한민국 이외의 장소에서 제기하거나 주장하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손실 및 손해

14. 이 약관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관할법원), 제40조(약관의 해석) 및 제44조(준거법)에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기타 공적 쟁송기관에 제기된 이 약관의 해석 또는 집행에 관한 청

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5. 전쟁, 반란, 폭동, 사회불안, 적군의 행위, 전염병, 격리조치, 정부조치, 국유화, 천재지변 또는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회사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이와 유사한 사유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6. 임차권에 관한 거래와 관련하여 폭리, 금리제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임차권이나 임차권에 기한 청구가 무효로 되거나 집행 불능으로 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7.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상의 임금채권, 퇴직금청구권, 산업재해 보상청구권 또는 각종 사회보험료청구권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8. 통일에 의해 야기되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 회복 청구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19. 임차권의 조건 및 약정사항과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

20. 목적부동산의 권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 확인을 위한 권원조사의 결과로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인수 거절이 되는 목적부동산의 권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1. 피보험자가 손실 및 손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피해 확정을 위한 형사절차(신고, 고소 등)를 행하지 않는 경우

22. 임대차 기간만료(종료)에 따라 임대인이 단순히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아래 각 호의 손실 및 손해는 이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경비,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과세당국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과금으로서 전월세계약시작일자 현재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2.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상권, 지역권, 부담, 과세당국의 처분 및 기타 사항으로서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3. 공적기록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나, 측량조사를 해야 확인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불일치, 경계선의 상충, 면적의 부족, 부동산에 대한 침범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4. 공적기록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이미 부여, 부과되었거나 또는 장차 부여, 부과될 용역, 노무 또는 물품 관련 제한이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5. 목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원 없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권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6.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으로서 아래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목적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간석지, 침수지, 강, 호수, 시내 및 개울 등 일정한 형태가 유지되는 수역에 위치하는 경우, 그러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나. 충적, 침식, 분리 등 기타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한 수로 또는 해안의 변경을 사유로 한 권리 또는 이익

다. 해안이나 수중에서의 어획, 수영, 수렵, 및 여타의 사용목적을 위한 상속권 하천부지 소유자의 권리 및 용수권 관련 권리 기타 법적인 권리 또는 이익

라. 섬, 부두, 방파제 및 항구 기타 목적을 위한 매립지와 관련된 권리 또는 이익

7. 전월세계약시작일자 이후에 발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4조에 의한 타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추가하여 보험증권상에 보상의 예외로 명시한 항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보증사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제12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제1항에 기재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2.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임차권에 관한 불리한 청구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회사에 즉시 통지하지 않아 증가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모든 책임은 소멸됩니다. 다만, 회사에 즉시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에 발송 및 제공되어야 할 모든 통지 및 서면은 보험증권의 번호를 기재하고 회사의 보험금 청구 담당 부서를 참조인으로 하여 회사의 주소지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6조(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

①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를 한 후, 보험금 청구인은 손실 또는 손해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이 서명하고 확인한 당해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증거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금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이 약관에서 부보하는 하자, 제한 기타 사항들 중에서 손실 또는 손해의 근거가 되는 사항과 손실액 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금 청구인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 회사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보험증권상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의 입증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④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인은 회사 수임인의 조사에 응하여야 하고, 그 작성일이 보험개시일자 이전 또는 이후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당해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반 증빙자료를 회사의 수임인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조사, 검토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수임인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의 수임인이 요청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인은 그 작성일이 보험개시일자 이전 또는 이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당해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로서 제3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상기 본 조 제4항의 제반 증빙자료를 조사, 검사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 수임인에게 서면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⑥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에 제공한 모든 기밀 정보는 그 정보의 공개가 보험금 청구 사건의 진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금 청구인이 회사의 조사에 불응, 회사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미제공 및 거부, 제3자로부터의 정보 획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이 약관상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청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형사 관련 법원판결문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대리인 관련 서류(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5. 계좌사본
6.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는데 필요한 서류
7. 목적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한 대출 관련서류

[상기 대출 관련서류 예시] : 대출 신청서, 대출 약정서

8.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대출기관에 보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9조(보장의 제한)

① 회사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회사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며, 회사는 그에 따른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임차권에 대한 권원을 온전히 확보하게 하는 경우
2. 소송이나 기타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는 것을 비롯하여 합리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 피보험자에 대하여 주장된 하자, 제한, 부담, 권리 또는 담보권을 소멸시키는 경우

②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제기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를 포함하여 모든 소송 또는 절차
개시된 경우, 회사는 부보된 권원에 불리한 관할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그
에 관련한 모든 불복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청구 또는 소송의 해결을 위해 피보험자가 임의로 인수한 채무
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2. 아래 '가'목에서 정해진 금액에서 '나'목에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아래 1) 내지 2)금액의 합계

1) 임차보증금

2) 그에 대한 이자(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의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가 회수한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㉕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제11조(보험가입금액 감소 및 책임의 감소 또는 소멸)

㉖ 제반 비용, 경비 및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이 약관에 의해 지급된 모든 지급액만큼 보험가입금액에서 감액됩니다.

㉗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분적으로 변제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그와 같이 변제되거나 소멸된 범위만큼 보험증권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감액됩니다. 그 후 보험증권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자의 발생 및 임차보증금 또는 그에 의해 담보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에 의해 증액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㉘ 임차권의 피담보 채무가 완전하게 변제되거나 임의 만족 또는 해소되는 경우 회사의 모든 책임은 소멸됩니다.

제12조(회사의 방어 및 조치와 보험금 청구인의 협력의무)

㉙ 회사는 피보험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 제기하는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권원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 청구나 기타 불리한 주장,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방어해 드립니다. 회사는 이러한 주장 또는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대리할 변호사 선임권을 가지되, 회사가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증권의 부보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주장 또는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발생시킨 수수료, 비용, 경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서면으로 인정하지 않은 수수료, 비용, 경비에 대하여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권리를 입증하거나 손실 및 피해를 방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소송 제기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회사는 이 약관상 회사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이 약관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거나 보험증권상 인정되는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합니다.

④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 기타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불리한 유권해석, 판결, 법령, 명령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불복할 권리도 갖습니다.

⑤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소송 제기, 방어 및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회사에 보장하며, 회사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의 명의사용을 허용합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1. 소송이나 기타 절차에서 증거, 증인의 확보, 소송 제기 및 방어,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보험증권상의 권원을 증명하는 데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에 합리적인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그러한 협력을 제공하지 않으며 회사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방어권의 행사, 소송의 제기,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비롯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피보험자의 협력을 요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소멸됩니다.

제13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 (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4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5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하거나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권원조사비용)

①회사는 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로부터 회사가 정한 권원조사비용을 받고 권원조사의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안내합니다.

②보험계약자가 청약서를 제출한 후 권원조사가 완료되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조사비용은 보험료의 일부로 납부된 것으로 합니다.

제21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개시일 전 또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그 임차권 사항과 그에 관련한 피보험자의 상세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개시일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아래의 사유 등으로 소멸할 때까지 보장을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의 반환, 만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2. 제1호 이외의 당사자의 합의로 인한 임차보증금의 만료 시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3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3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⑤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⑥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㉕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㉖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㉗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㉘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계약자가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㉔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7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2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㉕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6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2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㉑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㉒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㉓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㉔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2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3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2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금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 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

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

하기 전(2019.1.15.~2019.5.31.)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6.1.~2019.12.31.)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